● 제29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709. 1750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3)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역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3조 1,26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4억 원이 증액(0.1% 증가)되었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구 분	추경 안(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율(%)
		총계	3,126,892	3,122,506	4,386	0.1
	행	정운영경비	763	763	-	-
	재	무활동	4,603	13,492	△8,889	△65.9
	사업비		3,121,526	3,108,251	13,275	0.4
		일반회계	3,014,798	3,010,412	4,386	0.1
		행정운영경비	763	763	_	_
		재무활동	4,603	13,492	△8,889	△65.9
		사업비	3,009,432	2,996,157	13,275	0.4
	균형	형발전 특별회계	112,094	112,094	_	_
		사업비	112,094	112,094	_	_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3)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

-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 을 240백만원 증가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 고유목적 사업비(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를 편성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170백만원 감액하여 최종 예치금을 418 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 (B-A)				
계	1,398	1,638	1,638	240				
기타회계 전 입 금	600	600	600	_				
이자수입	397	397	397	_				
예 치 금 회 수	401	641	641	240				

			([11 -					
지 출 계 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B-A) (종)를				
계	1,398	1,638	1,638	240				
고 유 목 적 사 업 비	1,030	1,030	1,200	170 (16.5%)				
기 본 경 비	20	20	20	_				
예 치 금	348	588	418	70 (20%)				

※ 1차변경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로 예치금 240백만원 증액

※ 2차변경 : 이동·청소년 디자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 170백만원 편성(예치금 170백만원 감액)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관계법령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4)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추경안의 개요

○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은 3조 1,268억 9,155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1,225억 554만 원에서 43억 8,601만 원이 증액 편성(0.1%)되었음.

<표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X1,199,659)	(X1,199,898)	(X239)	0.1%
3,122,506	3,126,892	4,386	

○ 금번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은 서울시 전체에 대비하면 7.0%에 해당함.

<표 4. 서울시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년도 추경안(A)	`20년도 기정예산(B)	증감율(%)	증감 (A-B)
◇ 서울시총예산(a)	44,761,056	44,753,810	0.02	7,245
◇ 여성가족정책실(b)	3,126,892	3,122,506	0.1	4,386
※ 비중(b/a)(%)	7.0	7.0	-	60.5

2 추경안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하여,
 - ① 사업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액을 적극 발굴하여 세출재원 마련하고,
 - ②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무경비 편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총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안을 편성함.
- 총 27건 가운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을 제외하고, 자체 사업 9건 중 3건은 증액 사업이고 나머지 6건은 감액 사업임.
- 국비매칭 사업 14건 역시 7건은 증액사업이고 7건은 감액사업임.
- 시 자체사업 중 증액사업 3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와 여성가족재단 의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1건은 외국인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를 추가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려는 것임.
- 감액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 축소 등에 따른 것임.

<표 5. 추경예산안 내역>

연 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 예산(안) (A+B)	증감사유
	합 계 (여성가족정책실)	(x1,999,659) 3,122,506	(x239) 4,386	(x1,199,898) 3,126,892	
	소 계	(x10,412)	(x-)	(x10,412)	
1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발전센터 운영 -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알선 등(5개소 운영)	87,026 8,097	306 152	87,332 8,250	(손실보전) - 코로나19 관련 시설휴관 장기화로 인한 손실액(6.2~7.31.기간중) 일부 보전 -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절감액을 제외하여 손실보전금액 산출 · 손실액: 체육프로그램 무기계약직 인건비 92백만원, 시설유지용역비 224백만원 · 세출절감액: 운영비 164백만원
2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 여성·가족·보육, 아동 정책 등 연구·개발 및 평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국내·외 여성교류 강화, 서울여성플리자 운영 및 관리 등	13,398	461	13,859	 〈손실보전〉 - 코로나19 관련 시설휴관 장기화로 인한 손실액 일부 보전 -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절감액을 제외하여 손실보전금액 산출 · 세입감소 : 1,085백만원 · 세출절감 : △624백만원
3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 성평등위원회 및 복지거버넌스 운영 등	192	△60	132	 〈사업비감액〉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성평등위원회, 복지거버넌스 사업 등 축소 운영 · 성평등위원회 : △10백만원 · 복지거버넌스 : △30백만원 · 청책워크숍 : △20백만원
4	(가칭)서울여성역사샘 터 운영 - 여성사 연구 확대 및 시민관심 확산·공유를 위한 공간 조성 및 자료관 운영 등	395	△167	228	 (사업비감액)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설 개관지연에 따라 시설 운영비 감액 · 수탁시설 선정 : '20.8월 · 운영 준비 및 개관 : '20.8월~11월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 지원, 기념홍보사업 등	500	△80	420	(사업비감액) - 행사운영 공모사업 잇따른 유찰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림의 날 기념 국제포럼 행사) 행사 취소

연 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 예산(안) (A+B)	증감사유
	소 계 (여성권익담당관)	(x13,131) 40,714	81	(x13,131) 40,795	
6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사업 잔액 등 반환	0	81	81	(반환금) - 2018년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소 계 (보육담당관)	(x624,951) 1,943,277	(x215) 14,494	(x625,166) 1,957,771	
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x96,203) 274,633	(x215) 14,494	(x96,418) 289,128	 〈국비매칭, 자체시비지원〉 - 야간연장 어린이집 교사의 사용자부담금 등 국고 지원에 따른 매칭편성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 특례관련 시·구 자체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 등 지원
	소 계 (가족담당관)	(x508,336) 858,725	(x340) △9,548	(x508,676) 849,177	
8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x1,423) 4,883	(x△24) △39	(x1,399) 4,844	(국비매칭) -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시비 보조금 매칭을 위한 예산감액 (추가사업비 감액) ※ 여성기족부 기족정책과-49(2020.01.06.)
9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 근로 저소득 1인가구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2,251	△236	2,015	〈사업비감액〉 - 유사사업의 존재 등 사업 필요성 재검토에 따른 1인가구 임차보증 금 지원사업 예산 전액 감추경
10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립	(x1,000) 4,000	(x-) △902	(x1,000) 3,098	 〈국비매칭〉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시비 보조금 매칭을 위한 예산 감액 5,000백만원→3,496백만원 ('19년 2,496, '20년 1,000) ※ 여성기족부 기족정책과-3994, 2019.12.27.

연 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 예산(안) (A+B)	증감사유
11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1개소 추가 설치	(x131) 131	(x-) 196	(x131) 327	(국비매칭) - 2020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에 따른 시비 확보 ※ 국비 131백만원은 기 간주처리 완료
1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안전위험 및 노후된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신증축, 장비 보강 등 사업지원	(x373) 1,005	(x180) 360	(x553) 1,365	(국비매칭) -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시비 보조금 매칭을 위한 예산증액 -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미설치 장비 및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교체 ※자치구 수요조사 후 확정
13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x2,070) 7,710	(x61) 154	(x2,131) 7,864	 〈국비매칭〉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관련 신규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60개소→63개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 반영
14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 아동복지시설 중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및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심리검사 지원	(x113) 226	(x△6) △12	(x107) 214	(국비매칭) - 기정예산 편성 당시 대상을 130명으로 잡았으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시 122명으로 감소하여 예산 반영
1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에게 매월30만원씩 현금 지급	(x2,035) 4,071	(x△8) △16	(x2,027) 4,055	

연 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 예산(안) (A+B)	증감사유
1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 험을 가입하여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보호증진	(x35) 71	(x△2) △5	(x33) 66	 〈국비매칭〉 - 지원 아동감소(당초1,043명→964명)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감추경
17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정에게 연령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지원	(x3,944) 7,888	(x138) 277	(x4,082) 8,165	(국비매칭) - 25개 자치구 추가소요액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1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지원을 통한 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x189) 639	(x-) △7	(x189) 632	(국비매칭) -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감추경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615('19.12.18)호
19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사업 잔액 등 반환	10,956	△9,317	1,639	(반환금)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아동수당 반환금 감액 및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반환금 등 증액
	소 계 (아이돌봄담당관)	(x39,027) 166,328	(x△114) △490	(x38,913) 165,838	
2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12,893	△456	12,437	 〈사업비감액, 신규사업〉 - 단일임금 적용대상 중 적용시점 지연에 따른 미집행분 발생 : △1,000백만원 -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544백만원
2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 - 안심알림이 출결관리시스템 지원	(x463) 1,542	(x4) 15	(x467) 1,557	(국비매칭) - 안심알림이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및 시비매칭분 증액 반영
2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x1,182) 3,430	(x△118) △335	(x1,064) 3,095	(국비매칭) - 코로나19에 따른 휴원으로 예산 미집행분 감액하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연 번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 예산(안) (A+B)	증감사유
23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사업 잔액 등 반환		286	286	(반환금) -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집행잔액 : 32백만원 - '18년, '19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 254백만원
	소 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x3,774) 25,252	(x△202) △458	(x3,572) 24,794	
2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 방문교육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내 6개 특성화 사업 운영	(x2,411) 8,037	(x△202) △673	(x2,209) 7,364	 〈국비매칭〉 - 방문교육사업 규모를 현실에 맞춰 조정 하여 국비 변경내시 통보(방문교육 지도사 : 233명 → 193명, 40명 감축)
25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6,645	310	6,955	(신규사업) -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내 다국어 상담 지원인력 배치(10개소, 37명, 2개월)
26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 -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160	△155	5	《사업비감액》 - 코로나19로 안한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행사 취소
27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사업 잔액 등 반환	256	60	196	(반환금)19년도 다문화기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부족분

<표 6. 부서별 증감내역(안)>

(단위: 백만원)

부서명	기정예산(A)	증감액(B)	추경예산(안)(A+B)	
합 계	3,122,506	4,386	3,126,891	
여성정책담당관	87,026	306	87,332	
여성권익담당관	40,714	81	40,795	
보육담당관	1,943,277	14,494	1,957,771	
가족담당관	858,725	△9,548	849,177	
아이돌봄담당관	166,328	△490	165,83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5,252	△458	24,794	
아동복지센터	1,184	-	1,184	

- 부서별 주요 추경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표4> 참조), 우선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은 '여성발전센터 운영',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등 총 3건의 사업이 증액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등 총 4건의 사업이 감액되어 총 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아래 3건은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비 전액
 - : 코로나19관련 휴관기간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 전액
 - : 코로나19관련 휴관기간 자체수입 손실분 보전
 -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비 전액
 - : 2018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 '여성권익담당관'소관 사업은 총 1건의 사업에서 8,150만 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인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비임.
- '보육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1건의 사업에서 14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음. 이 사업은 국비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 부족분(시비) 및 어린이집 연장교 사의 사용자 부담금(4대보험) 등에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추가 확보 를 위한 것임.
- '가족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12건의 사업에서 총 95억 4,80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이 중 2건의 사업이 시 자체사업으로 1건은 감액사업이고 1건은 국고보조금반환 건임. 그 외 10건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아래 1건은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임.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전액
 - : 유사사업 등에 따른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예산 감액
-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4건의 사업에서 총 4억 8,96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1건은 시 자체사업을 감액하는 건이고, 3건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아래 1건은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전액
 -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적용 지연에 따른 미집행분 감액(△

1.000백만원) 및 코로나19 대응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증액(544백만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4건의 사업에서 총 4억 5,77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3건의 시 자체사업 중 2건은 증액사업이고, 1건은 코로나19로따른 행사 취소로 인한 감액사업임. 나머지 1건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아래 2건은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전액

: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인력 지원

• '국고보조금 반환' 전액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 사업별 검토의견

1)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추경안은 여성과 가족,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실천기능 강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 소통공간 활성화 등를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서울여성플라자의 휴관 등에따른 세입감소로 운영 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손실액에 대한 일부를 보전하려는 것임.
- '20년 동 사업의 예산은 133억 9,853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4억 6,081만 원이 증액(3.4% 증가) 된 138억 5,934만 원이 편성됨.

<표 7.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20년 제4회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x ⁻)	(_X -)
	13,859,339	13,398,527	460,812
출연금	(x-)	(x-)	(_X -)
	13,859,339	13,398,527	460,812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추경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③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집행부는 추경사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여성플라자 휴관(2~7월)으로 발생한 수입손실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의 최소 필요비용 보전"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부족에 대한 비용 증액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금번 추경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서울시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여성플라자의 휴관1) 및 이용자 감소에 따라 올 2월말부터 7월까지 시설운영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10억 8,487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그 중 세출예산 절감액인 6억 2,406만원을 제외한 총 4억 6,081만원의 차액을 보전하려는 것임.

1) 〈코로나19 대응 휴관기간〉

(2020. 7월말 기준)

구분	1차	2차	휴업일수	비고
식당/연수실	3/01~5/10 (71일)	5/30~7/31 (63일)	134일	
스포츠센터	2/27	~ 7/31	161일	연속 휴업중
커피전문점	2/25~5/10 (76일)	5/30~7/31 (63일)	139일	
직영(대관)	2/25~5/10 (76일)	5/30~7/31 (63일)	139일	

<표 8. '서울여성플라자' 관련 수입손실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기서대	계	수입	손실	비 고	
구분 시설명		71	2월말~6월말	7월말	비포	
시설운영	자체수입 (직영)	303,713	239,585	64,128	3년 평균대비 손실액	
수입	임대수입 (위탁)	511,008	400,131	110,877	사용료 손실 (일할계산)	
기타수입	관리비	270,151	214,918	55,233	전년 동월 관리비 기준	
합 계		1,084,872	854,634	230,238		

<표 9. '서울여성플라자' 관련 세출예산 절감 예상 비용>

(단위: 천원)

	구분		절감 내역	비고
	보일러기능보강 연기	130,000	기능보강 연기, 저녹스버너 설치 (170,000천원-40,000천원)	21년 시행
시설 유지	리모델링 설계 일부 취소	90,000	공간 리모델링 설계 축소(연수실만 적용) (169,257천원-79,257천원)	21년 설계
	시설물 보완 취소	74,520	시설물 보완공사, 도색, 설비교체 취소 등 필수기능 유지 외 취소	21년 시행
일반	수도광열비 등 절감	200,000	휴관에 따른 수도광열비 절감액 (5월 현재 1.3억 절감)	
운영	시설사용료 감면	45,000	휴관에 따른 市 납부 사용료 감면 (325,197원×139일, 7월말 기준)	
기타	기타 비용 절감	84,540	대면교육, 조사평가, 채용조정, 행사운영, 회의, 간담회 등 절감 가능한 사업 연기 및 취소 등	일부 취소
합계 6		624,060		

○ 다만 여성가족재단의 세출예산 절감안을 살펴보면, 여성플라자 휴관에 따른 수 도광열비 절감이나 시의 시설사용료 감면외의 사항은 사실상 다음 회계연도로 사업 시기를 미루는 것 일뿐, 결과적으로는 21년 예산에 편성을 전제로 짜낸 안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여성플라자 휴관이 연말까지 이어져 운영손실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연말까지 실제 필요예산을 추계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됨.

<표 10. 여성플라자 휴관 지속시(12월말까지) 추가손실액(안)>

(단위: 천원)

계	발생액	예상액					
AI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70,852	149,900	230,238	230,238	230,238	230,238		

^{※ 8}월은 일정기간 개관하였으며, 12월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계함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어린이집 인건비 부담 절감 및 교사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방과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 금번 추경안은 야간연장 어린이집 교사 등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30% 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매칭 시비분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 특례 및 국비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20년 동 사업의 예산은 2,746억 3,339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144억 9,426만 원이 증액(5.3% 증가) 된 2,891억 2,765만 원이 편성됨.

<표 1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년 제4회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96,417,700)	(x96,203,200)	(x214,500)
	289,127,652	274,633,393	14,494,25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96,417,700)	(x96,203,200)	(x214,500)
	289,127,652	274,633,393	14,494,259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금번 추경안은 국비매칭 사업(국시구비 매칭 비율 = 30 : 49: 21)에 대한 시비분 추가 편성과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 특례 관련 인건비 추가 지원, 국고미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한 시비분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표 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년 제4회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간연장형교사 사용자부담금 등 853명*사용자부담금지원 70,000원*12월*0.79	=	564,85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고미지원)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770명*2,981,630원*12월*0.64*0.79	=	13,929,409천원

- 우선 야간연장어린이집²⁾ 교사 853명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지원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매칭 분을 편성하는 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³⁾에 의거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표 13. '시간연장형교사 사용자부담금 등' 세부 산출내역>

- 시간연장형교사 사용자부담금 등(국비매칭) : 564,850천원
 - 853명*사용자부담금지원 70.000원*12월*0.79 = 564.850천원
 - ※ 국비 214,500천원(변경내시) / 매칭시비 350,350천원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 특례 지원으로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지원기준인 반현원의 정원 50% 충족 조건 적용을 예외로 하여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건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표 14. '국공립어린이집 코로나19 고용유지 특례' 세부 산출내역>

- 코로나19 고용유지 특례관련 : 143명, 2,587백만원
 - 고용유지특례: 코로나19관련 인건비 지원시 반 현원기준 적용 유예
 - · 산출 : 143명*2,982천원*0.64*0.79(국시비)*12개월 = 2,587백만원
 - ※ 정원충족 50% 미만인 반 수 (현원기준 유예 인건비 지원 혜택) : 월 평균 143개반

²⁾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산출기초>

- 6월 기본인건비 지원 보육교사수 기준으로 영아반 7,301명, 유아반 3,468명
 - · 평균 지원률 64% = (7,301명 * 80% + 3,468명 * 30%) / (7,301명 + 3,468명)
- 다만 시비 사업인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시·구 확충어린이집 등)은 497개소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예산편성 당시 273개소만 반영하고나머지 224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 요청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인건비 예산 소요 증가(국공립고용유지특례) 및 인건비 호봉인정기준 개선, 특수교사 자격수당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비가부족하게 되어 시·구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추가 지원은 62개소 (7월말 현재)에 그쳐, 기 지원받은 62개소를 제외한 162개소에 대한 부족인건비 11.342백만원 추경편성 필요"하다고 추경사유를 밝히고 있음.

<표 15. '국공립어린이집 코로나19 고용유지 특례' 세부 산출내역>

○ 시·구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부족 : 627명, 11,342백만원 · 산출 : 627명*2.982천원*0.64*0.79(국시비)*12개월 = 11.342백만원

- 즉 코로나19로 인한 보건복지부의 타 예산 지원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국고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추경에 증액하려는 것인데, 경상비인 교사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 향후 지속 요청을 통해 편성하려고 했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비과학적이고 무사안일하게 예산액을 추계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할 것임.

- 한편 정부 미승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시비 (79%)와 구비(21%)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관련 사항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시비차원의 인건비 지원 부담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현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 이고 전략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16.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정부등록 현황>

(단위: 개소, %)

9	면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월)
	공립어린이집수 소 기준)	658	690	750	844	922	1,071	1,274	1,481	1,661	1,730
	등록수	643	675	737	833	759	811	937	1,090	1,184	1,295
복지부	등록비율	97.7	97.8	98.3	98.7	82.3	75.7	73.5	73.6	72.1	74.9
등록	미 등록 수	15	15	13	11	163	260	337	391	497	435
	미등록비율	2.3	2.2	1.7	1.3	17.7	24.3	26.5	26.4	27.9	25.1

[·]자료출처: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3)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1인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인 사회적 고립과 빈곤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자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전액 시비 사업임.
- '20년 동 사업의 예산은 22억 5,13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이차보전금 2억 3,625만원이 감액(10.5% 감소) 된 20억 1,505만 원이 편성됨.

<표 17.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20년 제4회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X-)	(X-)
	2,015,052	2,251,302	△236,250
사무관리비	(X-)	(_X -)	(_X -)
사무선되미	73,000	73,000	0
연구용역비	(X-)	(_X -)	(_X -)
연구공역미	100,000	100,000	0
전산개발비	(X-)	(X-)	(X-)
선산/개월미	382,052	382,052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X-)	(X-)
인간경경기업도소	150,000	150,000	0
시키버지그	(_X -)	(_X -)	(x-)
이차보전금	0	236,250	△236,2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_X -)	(X-)
사시단세경경도소급	1,060,000	1,060,000	0
자치단체자본보조	(X-)	(X-)	(X-)
사시단세사존모조	250,000	250,000	0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감액의 필요성

- 동 사업은 '20년 본예산에 세부 신규 사업으로 ②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③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정보화전략 수립 및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8,205만 원 증액, ④ '나눔과 돌봄시간은행 구축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0만 원 증액, ⑤ '1인가구 임차보증금(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2억 3,62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금번 추경안은 세부사업 중 2020년 신규로 추진한 '1인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사업비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표 18.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20년 제4회 추경안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이 차 보 전 금	○근로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500가구*100,000,000원*0.9%*70%*3/12) = △236,250천원 증감사유
	1인 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재검토에 따라 전액 감추경

○ '1인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집행부는 시금고인 신한은 행과 개별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2억원 가량의 적은 예산으로 별도의 상품 출시하는 것의 타당성 부족으로, 기존 대출상품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표 19. '1인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사업계획(안)>

□ 사업계획(안)

- 신청대상
 -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 서울시민
 - 중위소득 45%(790.737원) 초과~100%(1.757.194원) 이하 1인가구
 - ▶ 사업 지원대상 추계: 1.500명(대상인원 39.120명*의 3.83%)
 - * 근로저소득 1인가구 39,120명 = 420,546건('18.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 × 64.6%('18. 단독다가구 2억원 이하 거래비율) × 32%('18. 1인가구 비율) × 45%('10. 기준소득 45%~100%)
- 지원주택 : 서울지역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연1.0%)**
 -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상품 중 본인 선택 취급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에 따른 이자지원(연 1백만원 이내)
 - ▶ 대출금리 : 신한은행 상품별 고시 금리에 따름(2.33%~2.68%)
 - ▶ 대상자 월별 이자 선납 후 분기(또는 반기)별 정산 지급(신한은행 이자출금 계좌 활용)
- 지원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식(최대 8년)
 - ▶ 전세대출 연장 시 전세보증금 및 연소득 변동 여부 재심사 불요(최초 대출에 근거)
- '20년 예산 : 236백만원(시비 100%)
- 그런데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이미 유사한 기추진 사업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19년도 서울시 청년임차보중금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보다 유리한 조건(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적어 사업 집행이 저조하여(예산집행률 47.5%) '20년에는 지원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이하, 본인 부담금리 1%로 개선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20. '1인가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의 유사사업 비교표>

구분	청년 임: 이자지	차보증금 원사업	2020년 서울 청년 월세지원사업	1인가구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지원사업	
	'17 ~ '19년	'20년(확대)	결제시전자급	(이자시원) 시원자급	
신청대상	만19~39세		만19~39세 이하 중위120%이하 1인기구	중위소득 45% 초과 100% 이하 1인가구	
연소득 기준	3,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지원금리	2% (본인부담금리 1~3%)	2 <i>%</i> (본인부담금리 1 <i>%</i>)	-	1 <i>%</i> (본인부담금리=대출금라-1%)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월세70만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지원내용)	2,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월20만원 월세 지원	1억원 이하 (* 실제 소득기준에 따른 대출한도는 4천만원 이하)	

○ 다만,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눔과 돌봄시간은행 구축 운영'사업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신설된 1인가구 관련 세부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차원에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사업은 반드시 서울시 전체 사업과의 비교와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국비 보조 운영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종사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순수 시비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은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적용 시점 지연에 따른 일부 감액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컵세척기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음.

<표 21.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20.7.24 기준, 개소, 명)

총 계		٨	설 유	r 형		운 영	현 황
o 11	개 인	단 체	공구립	법 인	사회적협동조합	종 사 자	이용정원
434	245	42	36	107	4	1.070	12.074
454	287(6	6.1 %)	147(33.9%)		1,070	12,874	

○ '20년 동 사업의 예산은 128억 9,298만 원이고, 4억 5,600만원이 감액(3.5% 감소) 된 124억 3,698만 원이 편성됨.

<표 2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20년 제4회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x-)	(x-)
	12,436,984	12,892,984	△456,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x-)	(x-)
	4,000	4,000	0
사회복지시설법정	(x-)	(x-)	(x-)
운영비보조	11,888,984	12,888,984	△1,0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x-)	(x-)
	544,000	0	544,000

<표 2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20년 제4회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회복지시설법정운	○종사자 처우개선비(법인시설) △(72개소*3개월*4,650,000원)		△1,000,000천원			
영 비 보 조	증감사유					
	단일임금 적용대상 중 적용시점 지연에 따른 미집행분	발생				
	○지역아동센터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181대*3,000,000원	=	544,000천원			
자치 단체 자본보조	증감사유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금번 추경안은 '20년 본예산에 신설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로의 적용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 는 원칙으로, 법인화를 원하는 개인시설에게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올 7월 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 승인 등이 늦어 짐에 따라 전환절차 중인 72개소의 적용 시점이 3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 상되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1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표 23. '단일임금 적용시점 지연에 따른 감액' 세부 산출내역>

□ 단일임금 적용시점 지연에 따른 감액 :△1,000,000천원

- 산출내역 : 72개소×3개월×4.650천원 =1.000.000천원
- 대상기관 : 법인(조합) 전화 준비중인 시설 72개소
- 적용시점 지연(7월→10월) : 대상기관 72개소의 3개월 미집행분 발생
- 적용시점 지연 사유: 단일임금 적용대상으로 상반기 중 전환할 계획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복지부의 법인(조합) 승인절차 소요기간이 길어져 적용시점이 3개월 지연

<산출기초>

- 시설 월평균 지원액 1,550천원 × 종사자 3명 =4,650천원
- ► 시설별 월평균지원액 1,550천원 (7월 950천원+ 8월 950천원+ 9월 2.750천원) / 3 = 1.550천원
- ▶월평균 지원액은 3분기 단일임금 신청액(7.24)의 평균이며, 9월은 명절수당 포함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적용을 위한 법인 시설 전환을 위해 집행부는 절차적 문제 등으로 법인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변경 및 보건복 지부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추진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호봉산정의 차등4)으로 인해 일부 지역아동센터들의 항의와 반발이 있는 바, 집행부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인화 과정의 행정적 지원과 법인 설립 이후의 법인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일회용품 감소로 인한 아동들에게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돌봄환경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예산 5억 4.400만원이 증액편성되

⁴⁾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소규모복지시설의 시설장은 2-3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시설이라는 점 등의 사유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에게는 4급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었으며, 지난 6월말 수요조사 결과 전체 지역아동센터 434개소 중 181개소에서 설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중에도 긴급돌봄을 통해 아동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철저한 청결·위생관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기 최소화를 위한 증액으로 판단됨.

<표 24. '지역아동센터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연번	자치구명	시설(개소)	지원대수
	 합계	434	181
1	종로	12	5
2	중구	4	2
3	용산	5	2
4	성동	11	5
5	광진	14	6
6	동대문	13	5
7	중랑	24	10
8	성북	27	11
9	강북	21	9
10	도봉	18	8
11	노원	23	10
12	은평	27	11
13	서대문	8	2
14	마포	11	5
15	양천	25	10
16	강서	20	8
17	구로	24	10
18	금천	26	11
19	영등포	17	7
20	동작	23	10
21	관악	27	11
22	서초	9	4
23	강남	4	2
24	송파	19	8
25	강동	22	9

5)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서비스 및 문화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7조5)에 따른 외국 인주민 지원시설 17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액 시비 사업임.

<표 25. 외국인지워시설 현황>

구분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문화체험 센 터	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내용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을 위한 One-Stop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서울시내 외국인센터(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구심체 역할 수행(서울글로벌)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서울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조기 정착지원	• 서울관광안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명동 일대 내·외국인 문화교류 허브 역할 수행	○ 서울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불편·부당사항 해소로 권익보호 ○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서울생활 정착 도모
개소수	2개소	7개소	1개소	7개소
시설명/소재지	서울글로벌센터(종로)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	연남, 역삼, 서래, 이태원, 이촌, 성북, 금천 센터	(중구 명동)	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센터(복지관내)
운영방식	민간위탁	자치구	민간위탁	민간위탁
`20년 예산 (백만원)	1,633(서울센터) 813(서남권센터)	1,759	600	평균 273 (총 1,640)

[※] 비즈니스 지원 시설은 2018. 9월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로 이관

○ 금번 추경안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을 제외한 것

⁵⁾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과 관련하여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차별행위로 결정하고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 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외국어 상담 및 통·번역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37명을 채용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 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려는 내용임.

<표 26.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개요>

〈총괄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bigcirc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가구 단위 지급)

* 신청 및 접수 : '20.8.24.(월) ~ 9.25.(금) / 온라인 및 현장 접수

○ 사업예산 : 총 35,310백만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및 일반회계)

○ '20년 동 사업의 예산은 44억 7,242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3억 1,000만원이 증액(4.7% 증가) 된 47억 7,242만 원이 편성됨.

<표 17.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20년 제4회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_X -)	(x-)
	6,954,610	6,644,610	310,000
민간위탁금	(x-)	(x-)	(x-)
	4,772,419	4,472,419	300,000
사무관리비	(x-)	(x-)	(x-)
	25,000	15,000	10,000
공공운영비	(x-)	(x-)	(x-)
	15,000	15,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6,000	(x-) 6,000	(x-)

연구용역비	(x-) 100,000	(x-) 100,000	(x-)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036,191	(x-) 2,036,191	(x-)

<표 27.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20년 제4회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목구분			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재난 긴급생활비 다국어 상담센터 운영(10개소)	=	300,000천원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142,400,000원*2개월	=	284,800천원	
민	간	위	탁	금	-사무기기 렌탈, 일반운영비 7,600,000원*2개월	=	15,200천원	
				증감사유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다국어 (배치(10개소)	상담·접수 지 ⁴	원인력	
					○전화면접 200,000원*20명*2일(행정지원)	=	8,000천원	
사	무	관	리	비	○교육진행(OT) 1,000,000원*2회	=	2,000천원	
					증감사유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지원인력	면접 및 교	육 진행비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금번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외국어 지원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37명의 2개월분 인건비와, 면접 및 교육 등에 소요될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할 것임.

○ 금번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총 381명, 26억 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동 사업외에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을 주관한 복지정책실 예산(21억 3천만원)으로 319명 채용하여 글로벌빌리지센터와 자치구에 파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으로 불용이 예산되는 예산(2억 1,400만원)으로 25명을 채용할 계획임.

<표 28.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명)

	구 분	소요예산	합계	외국어 인력	행정 인력	비고	
	합 계	2,644	381	216	165		
민간위탁금	서울글로벌센터 등(10개소)	300	37	34	3	※ 추경 예산	욀
사무관리비	면접진행, 교육 등	10	_	_	_	(310백만원)	힌
자치단체 경상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214	25	25	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일부 활용	에바이다바하
자치단체	글로벌빌리지센터 (7개소)	98	16	16	0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복 지
경상보조	자치구 (25개소)	2,032	303	141	162	집행 잔액 (지역돌봄복지과)	과

- ※ 긴급생활비 지원(32,400백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 자치구(303명) 및 글로벌빌리지센터(16명)(市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운영' 집행잔액 활용)
- 한편 복지정책실의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계획에 따라 동 추경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기간제근로자 인력채용 접수 및 심사, 선발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선발된 인원 37명은 추경안 심의 전엔 8월 27일부터 외국인지원시설에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음.
- ※ 복지정책실 지원계획 발표 : '20. 8.27(목), 온라인접수/현장접수 : '20. 8.31(월) ~ 10. 26(금)

<표 29. '기간제노동자 채용' 개요>

- 인력채용 접수 : '20. 7. 28(화) ~ 8. 6(목) (10일간)
 - * 근무기간(예정): '20. 8.27(목) ~ 10. 26(월) (2개월간)
- 심사 및 선발 : '20. 8. 7(금) ~ 8.12(수) ❖ 발표 : '20. 8. 14(금)
- 근무내용 (1일 8시간, 주5일근무)
- 기간제노동자 채용 완료(8.21, 381명)
- 총 사업예산 : 총 524백만원 (추경 31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14백만원)
 - 외국인시설 등(인력, 사무기기 지원/9개소): 310백만원(37명×2,468천원×2개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 : 214백만원(**25명**×2,468천원×2개월)
- 이는 명백한 예산편성전 사용집행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훼손시 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계획을 수립한 복지정책실 을 포함하여 동 사업 집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과 기간제근로자 포함 시설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6) 기타 집행실적 저조 사업

○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19>와 같이 추경안 제출일인 2020년 7월 31일 현재까지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음. 이미 지난 제3회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추경이 이루어진 바, 2020년도 3/4 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금번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30. 2020년도 예산집행 30%이하 사업현황 >

(7.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합계(여성가족정책실)	3,143,871	2,079,872	66.2	총 27건
소계(여성정책담당관)	90,322	53,314	59.0	〈7건〉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 정책 구현	100	28	28.0	·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비 및 성 별임금격차 컨설팅 비용 집행시기 미 도래(10월부터 집행) · 12월까지 사업비 전액 집행예정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	5	12.5	·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158	36	22.8	· 용역 등 수행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등) · 용역 진행 상황에 맞춰 연내 집행예정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192	40	20.8	· 코로나19로 성평등위원회, 복지거버 넌스 등 회의체 운영실적 저조 · 하반기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 ※ 60백만원 감추경 예정(4회 추경)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396	0	0.0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 후 적격심의 예정(8월중) 위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금 교부(9월) 위탁기관선정 일정 지연으로 운영비 167백만원 감추경 에정(4회 추경)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 한 소모임 지원 사업	68	0	0.0	·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 8월 중 교부 후 12월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70	0	0.0	· 학술용역 재심의 완료하였으며, 8월 공모 후 용역 완료되는 12월 집행예정
소계(여성권익담당관)	41,694	30,285	72.6	〈0건〉
소계(보육담당관)	1,947,736	1,309,832	67.2	〈5건〉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516	133	25.8	· 국비 교부일정에 따라 분기 교부 8월초 교부로 현재 집행률 43% ·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월별 교부

(7.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	0	0.0	· 시기 미도래 ·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다수가 모이는 행사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보육우수사례 공모전 및 동영상 제작 형태로 추진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 시 범사업	500	0	0.0	· '19년 추진사업으로, 보육현장의 우려 및 자치구들의 신청 취소로 인해 사업 중단 · 보육현장과 소통하여 AI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 추진 검토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0	5	7.1	· 용역준공 시기미도래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학술용역 정상 추진중으로 9월 준공 후 10월 집행 예정 · 하반기 홍보사업 집행 예정
누리과정 예산 집행잔액 반환	213	0	0.0	9월 중 집행예정
소계(가족담당관)	862,270	568,005	65.9	〈7건〉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	4,000	0	0.0	· 자치구 설계용역발주 일정에 맞춰 9월말 교부예정
가족센터건립	2,955	0	0.0	· 자치구 설계용역발주 일정에 맞춰 11 말 교부예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131	0	0.0	4차 추경을 통해 시비 196백만원(국비 131백만원 기 10차 간주처리) 확보 후 SH임대 확정(주택정책과-14728(20.8.6.) 호)에 따른 계약 등 사업 추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068	0	0.0	· 하반기에 공사비, 장비보강, 용역비 집행 예정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신규)	462	0	0.0	· 9월부터 사업 시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043	225	11.0	· 집행시기 미도래, 하반기 집행예정 - 리모델링 공사('20. 9월) 시행
국고보조금 반환	10,956	411	3.8	·중앙부처 고지서 발급후 4분기집행 예정
소계(아이돌봄담당관)	175,407	99,259	56.6	〈3건〉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4,817	325	6.8	· 집행시기 미도래 -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1,952 백만원(9월) 집행 예정 - 히반기 2개소 암차계약 추진 예정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54	0	0.0	·집행시기 미도래 ·하반기 보건복지부 평가지침 통보에 따라 집행 예정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5,068	1,413	27.9	· 집행시기 미도래(공사·감리비 등) -1호 약 2,435백만원(9월) 2호 약 335백만원(10월) 3호 약 65백만원(12월) 집행 예정
소계(외국인다문화담당관)	25,258	18,925	74.9	〈4건〉

(7.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233	19	8.0	· 코로나19 관련 초·중·고 개학연기로 사업 시작시기 조정(3월→6월) 및 대면수업 미실시로 인한 교육신청 저조 · 강의료 등 하반기 집행 예정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	160	5	3.1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잔여 사업비 감추경 예정(△155백만원)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101	0	0.0	· 행사 완료 후 지급 예정(14개 단체 선정 완료, 커뮤니티별 7~11월 행사개최)
국고보조금 반환	196	20	10.4	· 여가부 고지서 발급 후 전액집행 예정(9월)
소계(아동복지센터)	1,184	252	21.3	〈1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자체)	901	148	16.4	시설비 중 청사 전기 선로 교체비 4억 2천만원 미사용(9월 1일 청사 전기 교 체 시작하여 10월 31일 공사 완료 예 정)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⁶⁾에 따른 성평등기금이 운영 중이며,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1.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19년도말		`20년도말 조성액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d=(b)-(c)	e=a+d
24,200,686	997,369	1,050,000	△52,631	24,148,055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7)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의 증가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가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 역시 동일 금액이 증가한 바, 당초대비 20%를 초과 변경되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임.

^{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9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u>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u>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u>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표 32.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 (B-A)			
계	1,398	1,638	1,638	240			
기타회계 전 입 금	600	600	600	_			
이자수입	397	397	397	-			
예 치 금 회 수	401	641	641	240			

지 출 계 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B-A) (공)를			
계	1,398	1,638	1,638	240			
고 유 목 적 사 업 비	1,030	1,030	1,200	170 (16.5%)			
기 본 경 비	20	20	20	-			
예 치 금	348	588	418	70 (20%)			

○ 한편 변경안을 살펴보면(<표32>번 참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예치금 20% 증액은 이미 1차 변경에서 발생한 건이며, 최근 5년간의 예치금 조정내역을 살 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도 20%를 훌쩍 상회하여 증가한 내역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음.

<표 33.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당초(A)	1차 변경(B) (결산 반영)	증감(B-A)	증감률
2016	138,000	148,451	10,451	7.6%
2017	132,540	145,016	12,476	9.41%
2018	164,279	221,520	57,241	34.8%
2019	209,131	493,686	284,555	136%
2020	348,055	587,885	239,830	68.9%

- 동 변경안은 기금운용과정에서 고유사업이 아닌 재무활동의 예치금이 20%이상 증가되거나 지출항목을 축소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의회의 의결 건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지난 2018년도부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책사업"에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8)으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하자치유를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예산안과 달리 기금은 위원회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집행부의 자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는 향후 기금운용과정에서 과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요망된다 할 것임.

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2020), "서울특별시 2019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pp. 250.

6 종합 검토 의견

- 이상에서 제시한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금번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 전금 및 사업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법정의무 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추경 사유 에 대한 그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것임.
- 다만, 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각 사안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 사항 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금번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시비사업(예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난에 따라 편성이 요청된 바, 예산 산출 근거 등 세부편성 내용이 불분명 하 거나, 증액에 대한 타당성이 명확히 인정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금번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반영한 시비 반영 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시비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와 국고보조금의 미확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사전 사업계획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음.
- 기금변경안은 예치금의 20%초과된 사항에 의회의 의결을 누락한 건에 대한 하자치유 차원에서 제출된 바,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 할 것임.